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0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자원봉사센터장	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1명	2년 (주당35시간)	서대문구청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(자원봉사센터)	- 자원봉사센터 업무총괄 - 자원봉사 관련 기관, 단체 등 대내외적 협력 -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- 재난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
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하며, 응시연령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함)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 시 자 격 요 건
서대문구 자원봉사 센터장	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 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.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
※ 유의사항

- 1)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(상세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- 2)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- 3)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4. 보수수준

○ 연봉액 : 50,495천원

구 분	임용등급	연봉액(천원)
6급(상당)	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50,495

※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(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, 별표13)

(단위: 천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예상 연봉액 (하한액×35h/40h)
6급(상당)	86,606	57,708	50,495

-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
 -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- 시간외 수당,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 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주당 근무시간 : 주 5일 35시간 근무 (1일 7시간 근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1. 2.(월) ~ 11. 4.(수), (3일간, 09:00~18:00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)
 - ※ 대리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사본, 접수자 신분증 필수 지참
 - ※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우편환) 동봉 제출
 - ※ 우편접수 시, 접수기간(11. 2. ~ 11. 4.) 중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(☎02-330-1282)에게 접수 유무 확인 바라며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접수장소 :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(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, 5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(www.sdm.go.kr)에서 출력하여 사용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수입증지 판매처: 서대문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, 수입증지 가격: 7,000원)
(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,000원 상당의 우편환 또는 현금 동봉 제출)
 - ※ 제출된 서류상 허위 기재 또는 우편접수,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1차 서류전형	2026. 11. 6.(금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11. 9.(월) 예정	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	2026. 11. 12.(목) 예정	시간 및 장소 별도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11. 13.(금) 예정	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(별지 제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서대문구 수입증지 7,000원 (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)
- 수입증지는 종이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니,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증지 인증기로 날인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이력서 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③ 자기소개서 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④ 직무수행계획서 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별지 제6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된 것) 1부

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(원본 또는 사본)

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또는 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(별지 제7호 서식)' 추가 제출

⑨ 자격증 사본 1통 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 '고시공고' 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(☎ 02-330-1282)